

청주교육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정 2010. 12. 30. 규칙 제1263호
1차 개정 2011. 3. 22. 규칙 제1266호
2차 개정 2015. 3. 30. 규칙 제1368호
3차 개정 2020. 12. 9. 규칙 제1575호
4차 개정 2022. 2. 25. 규칙 제160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03. 30.>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부 및 교육대학원 입학금 책정에 관한 사항
2. 학부 및 교육대학원 수업료 책정에 관한 사항
3. 삭제 (개정 2022. 2. 25.)
4. 기타 학부 및 교육대학원 등록금 책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 3. 22.)

②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고, 위원은 학생처장, 총무처장, 학부생 대표 2인, 교육대학원생 대표 1인, 관련 전문가 1인, 학부모 또는 동문 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 3. 22.) (개정 2020.12.9.)

③ 교직원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한다.

1. 학부생: 학생처장이 총학생회장의 의견을 들어 추천
2. 교육대학원생: 교육대학원장이 원우회장의 의견을 들어 추천
3. 학부모 또는 동문 대표: 기획처장이 추천 (개정 2022. 2. 25.)
4. 관련 전문가: 기획처장과 학부생 대표 2인, 교육대학원생 대표 1인이 협의하여 추천하되 우리대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개정 2011. 3. 22.) (개정 2022. 2. 25.)

제4조(간사) 위원회의 회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기) ① 교직원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학부모 또는 동문 대표, 관련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 3. 22.)

③ 학생 대표는 당해 학년도 등록금 책정이 확정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단, 위원장 유고시에는 학생처장이 위원장을 대리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수당) 위원 중 학부모 등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 의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2010. 12. 30 규칙 제12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3. 22. 규칙 제12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3. 30. 규칙 제136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2. 9. 규칙 제15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2. 25. 규칙 제16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